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남근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21504 |
|----------|-------|

발의연월일 : 2026. 9. 21.

발 의 자 : 김남근 · 김우영 · 박정현  
민병덕 · 박홍배 · 염태영  
김 윤 · 임오경 · 오기형  
김태선 · 박민규 · 맹성규  
남인순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문투자자들이 ‘고수익 고위험’을 추구하는 집합투자기구인 사모펀드는 단기수익 극대화를 위한 과잉배당, 배당자금 마련을 위한 차고지매각, 투자대상 회사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차입매수(LBO) 행위 등으로 피인수기업을 부실하게 할 우려가 큰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아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공공운수사업인 노선 여객자동차 운수회사인 버스회사를 집중적으로 인수하고 있음.

서울시의 경우 2022년 1~8월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1,564억 중 사모펀드 계열버스업체에만 1,071억 원이 지원되었는데, 사모펀드 차파트너스가 인수한 서울 한국비알티는 인수 첫해인 2019년 204%, 인천 송도버스의 경우 인수 첫해 646%, 삼환교통 인수 다음해 144.3%, 강화교통 인수 다음해 277% 등 일반회사의 배당성향이 2017~2021 5년간 평균 26.3%, 상장회사도 36.98%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사모펀드

가 인수한 버스회사들이 사모펀드에 고수익 보장을 위해 과잉배당으로 하고 있음. 영업이익 이상의 과도한 배당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자본잉여금을 배당가능한 이익잉여금으로 전환, 차고지와 충전소 등 토지매각, 고이자의 사채를 발행하여 사모펀드가 인수, 정비인력 감축과 타이어 교체 시기 연장 등 그대로 방치할 경우 버스회사 재정이 부실화되고 시민들의 발인 대중교통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음. 게다가 여러 버스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이러한 과잉배당으로 다른 버스회사 인수자금을 확보하거나 심지어 인수한 버스회사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인수 대출금을 상환하고, 수원여객의 경우 차고지를 매각한 자금으로 인수 대출금을 상환하는 등 소위 차입매수(LBO) 방식의 인수를 하고 있는데, 이를 방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공공사업인 버스사업이 부실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음.

버스회사를 인수한 사모펀드의 투자전략계획서 분석 자료에 의하면 버스회사를 인수한 사모펀드들은 차고지를 매각하여 고배당을 하고 엑시트(투자금회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서울시의 건설자금 지원을 받아 차고지를 복합상가로 개발하는 등 시가지 확대로 주변이 주거나 상업지역으로 변모하여 매각이나 개발할 경우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차고지 매각·개발이 버스회사 인수 투자전략의 주요 목적임을 드러내고 있음. 서울시는 시가지 확대로 주요 주거, 상업지역화한 버스 차고지를 지하화하고 그 지상에 행복주택, 주민문화시설

등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공공오피스텔, 공공도서관 등으로 복합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공익적 공공개발을 위해서도 버스 차고지를 잘 보존하고 사모펀드들이 이를 고수익 확보수단으로 매각하거나 개발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은 시민의 발이라는 대중교통으로서의 공공성의 비중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양도·양수를 시·도지사에 대한 신고제로 운용하고 있어 감독관청인 국토교통부나 시·도지사가 개입할 여지가 없고(제14조), 사후적인 경영·서비스 경영평가 제도는 있으나 양도·양수 시 양수하는 사모펀드 등의 투자전략이나 사업계획을 사전 심사하는 제도는 없는 실정임. 또한, 차고지에 대해서도 면허유지 기준으로 차고지 확보기준만 있을 뿐 매각·개발에 대한 감독관청의 승인제도는 없는 상황임(제4조). 이에 노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양도·양수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인가 심사 시 시·도지사가 양수인이나 양수인 회사의 최대주주가 사모펀드인 경우 양수인 또는 양수인 회사의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를 하도록 하고, 사모펀드가 양수한 버스회사의 최대주주인 경우 과잉배당과 과잉부채를 발생시키는 물상보증, 지급보증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차고지의 매각·담보설정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청인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아울러, 준공영제는 적자노선, 수익노선을 구별하여 수익노선에 대

해서는 감독관청이 경쟁입찰을 통해 수익을 확보하고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재정을 지원하여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준공영제는 적자노선, 수익노선 등을 구별하지 않고 버스회사별로 표준운송원가로 정한 금액과 실제 운송수입 사이에 차액을 보전해 주는 방식을 취하다 보니 버스회사 간 경쟁이 발생하지 않고 영세한 버스회사가 난립하고 있는 문제도 있음. 이에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대도시의 사례와 같이 수익노선에 대한 경쟁입찰제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해서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정면허 제도를 시행하고 경쟁입찰을 거쳐 면허갱신 내지 재면허를 받도록 함(안 제4조의2, 제5조의4, 제14조의2,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 신설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면허를 하는 경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제4조의2 및 제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수익노선 경쟁입찰제) 제4조제3항 단서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한정면허기간이 종료한 경우 시·도지사는 해당 노선에서 새로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용할 사업자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제10조까지의 경쟁 입찰의 방식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의4(차고지 매각 승인) 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면허를 받은 차고지를 매도·증여·교환 및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

은 차고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1항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제14조제2항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양수인 등의 자격심사 및 공시의무) ① 시·도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249조의2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양수의 인가를 하여야 한다.

1. 100억원 이상의 자본시장법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을 5년 이상 운용한 경력이 있을 것
2.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자본시장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없을 것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양수하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사모투자집합기구인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모투자집합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2. 최대주주 또는 지분의 100분의 10 이상이 변경되는 경우

④ 제1항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모투자집합기구는 차입매수 인수 여부, 배당계획, 차고지 매각 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된 투자전략계획서 등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인가를 받는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전략계획서 등에 기재한 내용과 다르게 차입매수, 배당, 차고지 매각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⑥ 사모집합투자가구가 최대주주인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법인과 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자산·부채 및 손익을 합병 후 5년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 회계의 부채는 다른 회계의 자산으로 상환할 수 없다.

법률 제2171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에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4(과잉배당 등의 금지) ① 제20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최대주주가 사모투자집합기구인 경우에 한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금원을 배당을 할 수 없다.

1. 직전 회계연도에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이익잉여금
3. 차고지를 매도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차고지 매도 대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원

② 제1항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으로 배당할 수 없다.

제20조의5(보증 등의 제한) ① 제50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최대주주가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와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최대주주인 사모투자집합기구에 담보·물상보증 또는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행위
2.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발행하는 사채 또는 유상증자 증권을 최대주주인 사모투자집합기구가 인수하는 행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법인의 재정을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90조에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5조의4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차고지를 매각한 자

12. 제14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자료나 제4항의 투자전략계획서 등을 허위로 시·도지사에게 제출한 자
13. 제14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구분회계를 하지 아니한 자
14. 제20조의4를 위반하여 과도한 배당을 한 자
15. 제20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담보, 물상보증, 지급보증을 제공하게 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4조(면허 등) ①·② (생략)                                                                                                                                                                                 | 제4조(면허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단서 신설> | ③ -----<br>-----<br>-----<br>-----<br>-----<br>-----<br>-----<br>-----<br>-----<br>-----<br>-----<br><u>. 다만,</u><br><u>제3조제1항제1호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면허를 하는 경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하여야 한다.</u> |
| ④·⑤ (생략)<br><신설>                                                                                                                                                                                   | ④·⑤ (현행과 같음)<br>제4조의2(수익노선 경쟁입찰제)<br><u>제4조제3항 단서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한정면허</u>                                                                                                                      |

<신 설>

기간이 종료한 경우 시·도지사  
는 해당 노선에서 새로이 여  
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용할 사  
업자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에서 제10조까지의 경쟁 입찰  
의 방식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의4(차고지 매각 승인) 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면허  
를 받은 차고지를 매도·증여  
·교환 및 용도변경하거나 담  
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  
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  
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  
항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  
를 받은 차고지를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  
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1항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제1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①  
(생략)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 ⑪ (생략)

<신 설>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제1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③ ~ ⑪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양수인 등의 자격심사 및 공사의무) ① 시·도지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249조의2에 따른 사  
모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집  
합투자기구”라 한다)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양수하

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양  
수의 인가를 하여야 한다.

1. 100억원 이상의 자본시장법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  
재산을 5년 이상 운용한 경력  
이 있을 것

2.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자기  
자본을 갖출 것

3. 자본시장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같  
은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없을  
것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양수하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사모투자집합기구인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모투자집합  
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2. 최대주주 또는 지분의 100분의 10 이상이 변경되는 경우

④ 제1항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모투자집합기구는 차입매수인수 여부, 배당계획, 차고지 매각 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된 투자전략계획서 등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인가를 받는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전략계획서 등에 기재한 내용과 다르게 차입매수, 배당, 차고지 매각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⑥ 사모집합투자가구가 최대주주인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법인과 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자산·부채 및 손익을 합병 후 5년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이

법률 제21710호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신 설>

경우 특정 회계의 부채는 다른  
회계의 자산으로 상환할 수 없  
다.

법률 제21710호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4(과잉배당 등의 금지)

① 제20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  
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최대주주가 사모투자집합기구  
인 경우에 한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원  
을 배당을 할 수 없다.

1. 직전 회계연도에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  
로 전환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이익잉여금
3. 차고지를 매도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차고지 매도  
대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금원

② 제1항에 따른 노선 여객자  
동차운수사업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영업이익 등 대통령

<신 설>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

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  
으로 배당할 수 없다.

제20조의5(보증 등의 제한) ① 제  
50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최대주주가 사모집합투자기구  
인 경우 노선 여객자동차운수  
사업자와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가 최대주주인 사모투자집합  
기구에 담보·물상보증 또는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행위

2.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가 발행하는 사채 또는 유상  
증자 증권을 최대주주인 사모  
투자집합기구가 인수하는 행  
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자 법인의 재정을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90조(벌칙) -----  
-----

|                            |                                                                    |
|----------------------------|--------------------------------------------------------------------|
|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br>-----.                                                    |
| 1. ~ 10. (생략)              | 1. ~ 10. (현행과 같음)                                                  |
| <u>&lt;신설&gt;</u>          | <u>11. 제5조의4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차고지를 매각한 자</u>                        |
| <u>&lt;신설&gt;</u>          | <u>12. 제14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자료나 제4항의 투자전략계획서 등을 허위로 시·도지사에게 제출한 자</u> |
| <u>&lt;신설&gt;</u>          | <u>13. 제14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구분회계를 하지 아니한 자</u>                          |
| <u>&lt;신설&gt;</u>          | <u>14. 제20조의4를 위반하여 과도한 배당을 한 자</u>                                |
| <u>&lt;신설&gt;</u>          | <u>15. 제20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담보, 물상보증, 지급보증을 제공하게 한 자</u> |